

등록번호	인구여성가족과 -767
등록일자	2026. 1. 12.
결재일자	2026. 1. 12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인구정책팀장	인구여성가족과 장	보건복지국장
전태진	황선희	명노근	전결 2026. 1. 12. 김려수
협조자			

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


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

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

◆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(아동양육비, 생활안정지원금 등)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
I 사업 개요

□ 추진 근거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(국가 등의 책임), 제12조(복지 급여의 내용)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의3(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)
- 「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」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, 제6조(지원사업)

□ 지원 대상

- (한부모가족) 이혼, 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정
 - ▶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
 - ▶ 18세 미만: 2008. 1. 1. 이후 출생
- (청소년한부모)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정
- (청소년부모) 부와 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정*
 - *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함
 - ▶ '01.11 이후 출생자(상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) / '01.7.1 이후 출생자(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)

□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('25.12월 기준)

[단위 : 가구(명)]

구 분	합 계	모자가정	부자가정	조손가정	청소년한부모
가구 수	1,150	916	215	14	5
인원 수	2,902	2,340	527	24	11

※ 출처 : 행복이음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

- 예산현황: 총 4,761,050천원(국비 3,431,500천원, 시비 1,329,550천원)
-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: 4,276,250천원(국비 80%, 시비 20%)
 -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: 7,500천원(국비 80%, 시비 20%)
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: 468,300천원(시비 100%)
 -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: 9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Ⅱ 2026년 세부 지원 계획

<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>

- (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) 중위소득 63% 이하 → 65% 이하
- (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) 연령별 5~10만원 → 10만원
- (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) 연 9.3만원 → 연 10만원
- (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설)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지원

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(조손가족 포함)

○ 아동양육비

- 지원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* 자녀
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 지원내용: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지원
- 지급시기: 매월 20일

○ 추가 아동양육비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족)

- 지원대상: ①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
②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* 자녀
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 지원내용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
- 지급시기: 매월 20일

○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

- 대 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-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지원
- 지급시기: 7월 급여 지급일

※ 7월 급여 지급일 이후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 급여 지급일에 지급

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○ 아동양육비

- 대 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- 지원내용: ①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/ ②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
- 지급시기: 매월 20일

○ 점정고시 등 학습지원

- 지원대상
 - ▷ (점정고시 학습지원)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이 없고, 학업이 단절되어 점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
 - ▷ (재학생 학습지원)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, 중·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
- 지원한도: 가구당 연 154만원
- 지원내역: 학원비, 교재비, 학용품비, 교통비, 교복구입비
 - ※ 연도 중 지원대상자의 학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, 연간 한도(154만원) 내에서 지원 가능

○ 자립촉진수당

- 대 상: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
 - ※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지원내용: 가구당 월 10만원 / 1년 단위 지원
 - ※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나,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

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(시 자체 사업)

○ (지원 기준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

※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중복 지급 가능(2023년부터 아동양육비 기준 반영)

○ 학습지원비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
- 대 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- 지원내용: ①초등학생 20만원(상·하반기 각 10만원) / ②중학생 25만원(상 15만원, 하 10만원) / ③고등학생 35만원(상 20만원, 하 15만원)
- 지원시기: 연 2회(6월, 10월 / 25일)

○ 명절지원금

- 대 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
- 지원내용: 세대별 연 20만원(설·추석 각 10만원)
- 지원시기: 설, 추석 전 지급

○ 월동비

- 대 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
- 목 적: 동절기 한부모가족에 난방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
- 지원내용: 세대별 연 30만원
- 지원시기: 11월 중 지급

④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('26년 신규)

- 대 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 부모*의 자녀

*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

- 지원내용: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지원

- 지급시기: 매월 20일

Ⅲ 행정사항
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계획 알림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일정별 적기 급여 지급 등 사업 추진
- 지원대상자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(타 복지급여와 중복지급 제한)
 - 아동양육비, 추가 아동양육비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
 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,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,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과 중복지급 제한

붙임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 1부. 끝.

참고

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주요 개정사항(요약)

□ 기준중위소득(100%)

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
'25년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
'26년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

□ 자격별 선정기준

구분			2인	3인	4인	5인	6인
한부모 및 조손가족	복지급여, 증명서 (65%)	'25년	2,477,575	3,165,972	3,841,597	4,478,161	5,080,827
		'26년	2,729,540	3,483,373	4,221,580	4,911,867	5,561,369
청소년 한부모가족	복지급여 (65%)	'25년	2,556,228	3,266,479	3,963,552	4,620,325	5,242,123
		'26년	2,729,540	3,483,373	4,221,580	4,911,867	5,561,369
	증명서 (72%)	'25년	2,831,514	3,618,254	4,390,397	5,117,898	5,806,660
		'26년	3,023,490	3,858,506	4,676,211	5,440,838	6,160,285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지원기준 및 지원액

구 분			지 원 대 상	지 원 액		비고
				2025년	2026년	
아동양육비	1	아 양 육 동 비	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(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	월 23만원		매 월 20 일
	2	추 가 아동양육비	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	월 5만원 ~ 10만원	월 10만원	
	3	청 소 년 한 부 모 아동양육비	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자녀	월 37만원		
			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자녀	월 40만원		
	4	자립촉진수당	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	월 10만원		
	5	아동교육지원비 (학용품비)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(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	연 9.3만원	연 10만원	연1회
생활안정지원금	6	학습지원비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	초: 20만원 중: 25만원 고: 35만원		연2회 초(상10,하10) 중(상15,하10) 고(상20,하15)
	7	명절지원금	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	연 20만원		
	8	월 동 비	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	연 30만원		
청소년부모	9	아동양육비	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	월 25만원		매월 20일

※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통비(연 10만원)는 세종시
이음패스 시행('24.9.10.)으로 2025년도부터 지원 중단